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onstruction
Policy

논단 2

ESG 내용 및 동향



(E) ESG의 주요 내용 및 동향 : 환경 요소를 중심으로

구지선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
(jisunku@gtck.re.kr)

- I. 들어가며
- II. ESG 배경 및 필요성
- III. ESG 중 환경 관련 국내외 규율 동향 및 이슈
- IV. ESG 중 환경 요소 관련 건설업이 나아갈 방향

1

I. 들어가며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를 정량화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를 의미한다. 최근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ESG 경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ESG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인 환경은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한 리스크 확대,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탄소국경조정 도입 등과도 맞물려 기업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ESG에 대한 관심과 비교하면, 아직 우리나라의 ESG는 걸음마 단계이다. 아직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는 법제화되지 않았고, 이제 한국형 ESG 평가지표 정립에 착수한 상황이다. 기업들에게 ESG 경영은 필수가 되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단에서는 ESG 중 환경 요소와 관련된 동향 및 이슈를 살펴보고, 건설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ESG 배경 및 필요성

1. ESG의 도입 배경

ESG는 2004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가 작성한 “Who Cares Wins -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투자 대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제시하였고, 투자자 외에도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후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은 ESG의 구성 요소를 보다 구체화하였는데, ① 환경 : 기후변화, CO2 배출, 자원고갈, 폐기물, ② 사회 : 노동환경, 지역사회, 안전보건, 다양성, ③ 지배구조 : 이사회, 부정부패, 로비 및 기부, 보상체계를 제시하였다.

2. ESG 확산의 필요성 및 주요 이슈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중요성 확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패러다임은 단순히 윤리적 관점의 기업 이미지 제고에서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실현으로, 더 나아가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을 넘어 리스크 관리, 신사업 기회, 파트너십 전략을 통합하는 관점으로 변모하고 있다.¹⁾

(2) 책임 투자의 강화

기관투자자는 투자 의사 결정 시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의 수익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한 이래 3대 연기금이 책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국민연금은 석탄 채굴산업에 투자 제한 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을 도입하고, 주식·채권 관련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책임 투자 이행 여부를 반영하기로 하는 등 주도적으로 ESG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1) 이준희, 한국기업들의 ESG 경영을 위한 변화 I : ESG 경영의 개념과 접근 방법, Deloitte Insight No.16, 2020, 19면

III. ESG 중 환경 관련 국내외 규율 동향 및 이슈

(3)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의 부각

기후변화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실현해야만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국들은 이미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기술 개발 등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1. ESG 공시 확대 및 의무화

EU는 기업의 ESG 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기존 비재무정보 보고 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보완·개정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과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을 통해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은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에 따라 18개 항목을 의무 공시해야 하는데, 환경 관련 항목은 온실가스, 탄소 발자국, 투자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화석연료 분야 기업과의 연관성, 비재생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중, 기후 분야 에너지 소비 집약도, 생물다양성 민감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 폐수 방류, 유해폐기물 비율이다.²⁾ 특히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SFDR에서의 기후 및 환경 분야 의무공시 항목은 온실가스, 생물다양성, 물, 폐기물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ESG 공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지속가능보고서의 공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3단계 추진계획을 통해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으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는 전 상장사에게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2. ESG 평가 지표의 일원화

기업의 ESG 경영이나 평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ESG 평가 지

2) 오태현, EU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4 No.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5, 6면

표나 기준은 기구별로 상이하다.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이하 “GRI”)의 기준은 환경 분야 8개 주제 30개 지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SASB”)는 11개 산업군 77개 산업별로 ESG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환경 자본은 7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근거하여, GRI, SASB,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등은 비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글로벌 표준 정립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속가능보고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ESG 평가 항목에도 기관별로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K-ESG 초안은 환경경영 정책, 환경경영 성과, 환경경영 검증, 법규 준수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한국거래소가 ESG 정보 공개 가이드스를 통해 발표한 권고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사용, 폐기물 배출, 법규위반·사고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차이가 있다. ESG 정보 공개 가이드스를 보면 기후변화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의 경우, 직접 배출량 또는 에너지 사용량 외에도 간접 배출량(Scope 2)³⁾과 간접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 지표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 관련 자율 공시체계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ESG 모범 기준을 개정하였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자산가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설비를 좌초자산(stranded asset)으로 분류하여 위험을 고려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해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내부탄소가격 도입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의 ESG 중 환경(E) 관련 평가 지표

구분	정의 또는 항목	평가 지표
K-ESG 초안	환경경영 정책	환경정책 및 조직, 기후변화 대응
	환경경영 성과	친환경 비즈니스, 폐기물 배출량/재활용률
	환경경영 검증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
	법규 준수	환경 법규 위반
한국거래소	온실가스 배출	직접 배출량(Scope 1), 간접배출량(Scope 2), 배출 집약도

3)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은 기업이 소유 및 통제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Scope 1)은 없지만 기업이 전기, 열 등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한다.

구분	정의 또는 항목	평가 지표
	에너지 사용	직접 에너지 사용량, 간접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사용 집약도
	물 사용	물 사용 총량
	폐기물 배출	폐기물 배출 총량
	법규위반·사고	환경 법규위반·사고
한국기업지배 구조원 ⁴⁾	리더십과 거버넌스	환경경영 리더십, 환경경영 전략 및 목표, 환경경영 거버넌스
	위험 관리	환경 위험과 기회의 식별, 평가 및 관리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위험관리체계
	운영 및 성과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친환경 공급망, 친환경 사업장, 성과관리, 환경회계, 생태계 보전
	이해관계자 대응	이해관계자 설정, 이해관계자 대응 활동, 환경정보 공개
국민연금	탄소배출 관리 수준	온실가스관리시스템, 탄소배출량, 에너지소비량
	환경유해물질 배출 관리 수준	청정생산관리시스템, 용수사용량, 화학물질 사용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 노력 수준	친환경제품 개발 활동, 친환경 특허 친환경 제품 인증, 제품 환경성 개선

또한 평가 대상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ESG를 평가한다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기업이 작성한 내용뿐만 아니라 제시된 정보의 객관적 근거까지 검증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3.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과 ESG 정보 공시

(1)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테스크포스(TCFD) 권고안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의 요청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테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이하 “TCFD”)를 설립하였고, TCFD는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위험 관리와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권고안(이하 “TCFD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TCFD 권고안은 크게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조직에 미치는

4)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2021.8.

실질적 및 잠재적 영향, 기후변화 관련 위험의 관리를 위한 조직 차원의 프로세스와 지표 및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테스크포스 권고안의 주요 내용⁵⁾

구분	주요 내용
지배구조	-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에 관한 이사회의 감독에 대해 설명할 것 -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을 설명할 것
경영전략	- 조직이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파악한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설명할 것 -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경영전략,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것 - 2℃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한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조직의 경영전략의 유연성을 설명할 것
위험관리	- 기후변화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절차를 설명할 것 - 기후변화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절차를 설명할 것 - 기후변화의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는 조직의 절차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설명할 것
지표·목표 설정	- 조직이 경영전략 및 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를 설명할 것 - Scope 1, Scope 2, 해당시 Scope 3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을 설명할 것 - 기후변화의 위험 및 기회, 목표 달성도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이 채택한 목표를 설명할 것

(2) EU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

EU의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에서는 기후 및 환경 지표 중 온실가스 항목의 평가 지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 발자국, 온실가스 집약도, 화석연료 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과의 관련성, 재생 불가능 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율, 고영향 기후 부문별 에너지 소비 집약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는 물론 2023년 1월부터는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 부문의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과 피투자기업의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유럽에 진출한 국내 기업, 유럽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기업들은 해당 정보에 대한 확보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5)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17.

IV. ESG 중 환경 요소 관련 건설업이 나아갈 방향

ESG는 환경, 노동 조건 등 비재무적 요인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나 사회 공헌 활동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ESG는 기업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경제적 가치 추구에 덧붙여 사회·환경적 가치를 실현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게 될 때 실현될 수 있다.

건설업을 포함한 2차 산업은 서비스업이나 첨단산업과는 달리 ESG 중 환경 요소의 실현에 어려움이 많다.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이상기후로 작업 환경이 변화되어 공기 지연, 공사비 상승, 추가적인 안전 문제 등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설업은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경영 전략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 외에도 친환경 인증 목자재, 재활용 콘크리트 등의 친환경 자재 구매, 패시브 및 액티브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로에너지빌딩 건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바닥재, 벽지, 창호 등의 건설자재의 경우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구지선·최봉석, 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제42권 2호, 한국환경법학회, 2020.
2. 오태현, EU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4 No.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5.
3. 이준희, 한국기업들의 ESG 경영을 위한 변화 I : ESG 경영의 개념과 접근 방법, Deloitte Insight No. 16, 2020.
4.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2021.8.
5.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17.